

부산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8가합489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국제

담당변호사 황주환

3. A, B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

피 고 1. E

2.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 론 종 결 2020. 10. 21.(원고 1., 2., 피고 1.에 대하여) 2020. 12. 23.(원고 3., 피고 2.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 E는,

가. 원고 A에게 246,267,5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2017. 2.
7.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46,267,561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03,44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 A, B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 B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원고 A, B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F은 원고 A, B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이 사건 2020.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C는 2016. 6. 6.경 G, H와 부산 기장군 I에 소재한 J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임료 4,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C는 2017. 11.경 친언니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음식점 일체의 영업 자산을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다.
- 3) 원고 A, B은 2018. 11. 8. C를 상대로 C가 피고 E의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E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와 이 사건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4) C는 2018. 4. 19. 이 법원 2018하단431, 2018하면43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5. C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 소송수계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 5) 이에 원고 소송수계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에 따라 원고 A, B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면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6) 원고 A, B은 2020.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E에 대하여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면서 2020. 9. 16. C에 대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주장

원고 A, B은 C에 대한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수계인이 원고 A, B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판단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원고 A, B이 C에 대한 파산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소송수계인이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부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섰 피고 F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소송수계인의 주장 요지

C는 특정채권자인 피고 F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거나 무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C가 미납한 월세 13,200,000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고 E가 대여한 2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1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상부인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월(같은 법 제392조 제3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등 참조), 무상행위의 부인은, 그 대상인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회생회사의 수익력과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회생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유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수익자와의 통모 여부 등 회생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상태보다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의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회생회사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F이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자산 일체를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F이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H에게 차용한 금액 20,000,000원 및 C가 미납한 월세 13,200,000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위 금액들을 공제한 16,800,000원(= 50,000,000원 - 20,000,000원 - 13,200,000원) 상당의 반환채권은 피고 F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F이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C가 부담하는 다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피고 F이 C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에 대한 다른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피고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음식점의 자산 일체를 양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C의 파산신청일인 2018. 4. 19.로부터 6월 이내인 2017. 11.경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무상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 소송수계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피고 F이 2019. 7.말경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K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다시 양도받는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F은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피고 F이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 및 E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000,000원, C의 H에 대한 미지급차임 채무 13,200,000원을 함께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액수는 원고 소송수계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위 차용금 채무 및 미지급차임 채무를 공제한 16,800,000원(= 50,000,000원 - 20,000,000원 - 13,200,000원)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 F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3.부터 원고 소송수계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 F에게 송달된 2020.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소송수계인은 피고 F이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2017. 11. 2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소송수계인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주혁, 판사 김선희, 판사 박승휘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1. 원고 A의 대여금

원고 A는 2013. 12. 16. 피고 E에게 1억 원 이자 월 14.4% 변제
기 2014. 12. 15.로 하여 대여하였고, 변제기에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변제공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 A, 원고 B와 피고 E 사이의 L 은원점의 동업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정산금청구권

가. 1차 투자

2015. 1. 경 L 은원점을 피고 E와 M가 862,000,000원
을 투자하여 절반지분으로 동업하던 중 2015. 12. 16. 피고 E 지분에
대하여 투자를 하라고 하여 원고 A, 원고 B 각자 100,000,000원
씩을 투자하여 E 231,000,000/862,000,000지분 A
100,000,000/862,000,000 B 100,000,000/862,000,000으로
L 은원점을 동업하였으며, 참고로 사업자 명의는 피고 E와 소외
M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 2차 투자

그 후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투자를 할 것을 요청하므로 원고
들은 2017. 7. 1. 각자 3,500만 원씩을 추가로 투자하므로 L의
투자액은 전체투자액 862,000,000원 중 M 431,000,000/862,000,000
피고 E 161,000,000/862,000,000 원고 A

135,000,000/862,000,000 원고 B 135,000,000/862,000,000 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 L 온천점의 동업 지분 처분으로 인한 손해

- (1) 피고 E 는 L 온천점에 대한 이익금을 2016. 12. 경부터 정산해 주지 않는 등 하다가 원고들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 E 와 위 M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동업자인 원고들 몰래 피고 E 지분을 제 3자에게 헐값인 345,000,000원에 처분을 해 버린 사실을 2017. 12. 말 경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헐값에 처분을 한 경위를 확인 한 결과 피고 E 는 처인 C 명의로 별도의 피자점인 부산 기장군 N J 정관점을 개업하면서 건물의 대지를 장기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지상에 짓는 건물의 명의로는 대지 소유주 명의로 건축을 하되 건축비, 집기비품 인테리어 등 비용 10억 원 이상을 E 가 사채 등을 조달하여 처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다가 사채 등에 쫓들리자 위와 같이 헐값에 처분 한 후 위 매각대금 전액을 C 가 운영하는 위 J 정관점의 건축 및 개업비용의 변제 등을 위하여 증여의 방법으로 C 의 빚을 정산해 버리므로 원고 A, 원고 B 에게 각 동업투자 지분 각 13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2) L 온천점의 투자 이익금 미지급

원고들은 위와 같이 L 온천점에 대하여 2016. 11.까지는 이익금을 정산 받았으나 그 이후 피고 E 는 2016. 12.부터 2017. 12. 까지 매월 이익금으로 정산해야 할 정산금 각 11,267,561원씩을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6,267,561원, 원고 B에게 146,267,561원의 불법행위 및 이익정산금(약정)에 기한 채무가 있습니다.

3. 원고 B과 피고 E 사이의 L 울산점의 동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정산금청구권

가. 2015. 12. 24. 원고 B과 피고 E의 1명이 L 울산점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여, 원고 B이 5,000만원 피고 E의 1명이 4억 원을 투자하므로 원고 B이 11.1% 피고 E측이 88.9% 비율로 동업을 했습니다.

- 나. L 울산점의 동업 지분 처분으로 인한 손해

원고 B이 위와 같이 피고 E와 동업으로 L 울산점을 운영하던 중 역시 그 사업자 명의가 피고 E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J 정관점의 건축 및 개업비용으로 쏘플리자 울산점을 L 본사 사장 O에게 2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17. 10. 15. 양도할값에 팔았다고 하며 원고 B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2017. 12. 말경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E는 원고 B에게 동업투자 지분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나아가 피고 C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 돈을 증여받아 J 정관점의 건축 및 개업비용으로 충당하여 동해상당을 증

여받은 것입니다.

다. L 울산점의 동일 지분에 대한 이익금 미지급액

원고 B 은 위와 같이 L 울산점에 대하여 2016. 11.까지는 이익금을 정산 받았으나 그 이후 2016. 12.부터 2017. 12.까지 매월 이익금으로 정산해야 할 정산금 7,181,647원을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E 는 손해배상 및 정산금으로 원고 B 에게 57,181,64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4. 결론

가. 피고 E 는

원고 A 에게 된 246,267,561원 중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 부터 2017. 2. 7.까지 연 30%의 약정 지연손해금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24%로 감축)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146,267,561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2017년 말경 처분하였다고 정확한 일자는 모를 지연손해금은 2018. 1. 1.부터 청구) 이 사건 소장송달 일까지 연 5%의 민사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 피고 E는
원고 B에게 돈 203,44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2017년
말경 지분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날짜는 모름 지연손해금은 2018. 1. 1.부터
청구)이 사건 소장송달 일까지 연 5%의 민사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